

광주고등법원 1심 뒤집고,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인정!!!



광주고등법원(2015. 4. 24. 선고 2012나4847 판결)은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들은 금호타이어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근로관계에 있다며 원고들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원재료 하역공정, 크릴룸 공정, 스크랩 공정, 스프레이 공정, TBR 리턴물 공정, PA리턴 공정, 오픈밀리턴 공정, 검사 공정, 포장 공정에 종사하였습니다. 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청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원고들은 일련의 타이어 제조공정 중 일부에 참여해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원청이 공정개요, 기술지침, 관리표준 등을 작성하여 교부·부착하여 구체적인 작업물량까지 결정/원청은 직접, 또는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개별적,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구두 또는 표시부착 등의 방법으로 지시/원고들이 원청 직원의 작업장소와 공간적으로 다소 떨어져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청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 행사한 점 부인할 수 없음

원청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들은 일련의 타이어 제조공정 중 하나 또는 하나의 공정 중 세분화된 작업단계에 참여하였는데 그 전후에 원청 직원들이 참여하는 공정 내지 작업단계가 접속되어 사실상 원청 직원들과 혼재되어 타이어 제조작업 내지 특정한 공정을 협업하여 수행/원고들은 종전 원청 업체 직원들이 하던 업무를 수행 또는 교대하여 수행

협력업체가 근로자의 선발, 근로자의 수, 작업·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협력업체들이 별도의 취업규칙을 가지고 근로자를 선발하고 인력배치표를 작성하여 도급업무에 투입하였으나, 원고들은 협력업체 교체과정에서도 그대로 고용승계되는 등 원청이 협력업체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원청은 도급비 산정·지급을 위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 휴가 등 근태상황을 파악/물량 기준으로 도급비 산정한 경우에도 도급업체 근태상황을 기준으로 도급비를 산정·지급함

원청업체 업무와 구별되고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의 업무는 원청 직원들이 이전에 수행하였거나 다른 공장에서는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 원청 직원들의 업무와 동질적/비교적 단순반복적 업무로 특별한 전문성·기술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도급의 목적은 독자적으로 진행·완성시켜야 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구분된 작업단계들 중 일부의 수행으로 노무의 제공으로 보임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구비 여부

별다른 인적·물적 시설 없음/원청이 협력업체의 설립·폐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협력업체 대표자들은 원청업체와 관련된 사람들임

의의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지난 2월 현대차 아산공장 판결 등을 통해 새롭게 제시한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적용하여 금호타이어의 사내 하도급이 불법파견임을 인정,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타이어 제조업체에서도 타이어 원재료를 하역하는 작업부터 생산한 타이어를 검사하고 포장하는 업무까지, 사실상 모든 공정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풍산 정리해고 부당, 교섭대표노조 인정!!

PSMC(구 풍산마이크로텍)가 2011년 54명을 정리해고한 것은 얼마전 법원에 의해 부당해고임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 당시 금속노조 풍산마이크로텍지회는 교섭대표노조가 되었지만, 한국노총 PSMC노조는 지회 조합원 다수가 해고되었기 때문에 과반수 노조가 아니라며 이의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따져보지도 않고 정리해고자를 제외하고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 결국 PSMC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였습니다.

☞ 이에 금속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정리해고자를 제외하고 조합원수를 산정하여 PSMC노조가 과반수노조라고 결정한 것에 대하여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4월 3일 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조합원 수를 실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중에 해고된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따져서 조합원 수에 포함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금속노조 지회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였습니다(2014누42959 판결). 위 판결은 중노위의 상고포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금속노조법률원 충남사무소 개소

금속노조법률원 충남사무소가 지난 4월 14일 개소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에는 30여개의 지회에 약 9,500여명의 조합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남사무소는 경남사무소에 이어 2번째로 설치된 법률원 지역사무소로서 지역 동지들과 긴밀하게 호흡하면서 교육, 상담, 자문, 법규정책 사업, 현장 상황 발생시 긴급대응, 사건진행 등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남사무소에는 3년동안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면서 많은 승리를 이끌어냈고 쌍용차지부, SJM 지회, KEC 지회 등 여러 투쟁사업장 동지들과 함께 하고 이들과 연대했다는 이유로 형사재판까

2015년 2/4분기 금속노조 법률학교

일시 : 2015. 5. 15. 13:00~17:40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교육내용 : 최신주요판결

기업구조변동의 최근 경향과 노동조합의 대응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임금체계 개편 대응

참가신청 문의 : 02-2635-0419

삼성전자서비스 루게릭병 산재인정!!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은 온몸의 근육이 위축되면서 사지가 마비되는 병으로 산재 승인이 매우 낮습니다. 얼마 전 근로복지공단 대전질병판정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수리기사로 일하였던 이현종 씨가 신청한 최초요양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제품 수리업무의 특성상 유연납을 장기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20년 가까이 보호구 없이 일하며 납분진, 흙, 유기용제, 전자기장에 노출되었다면서 산재를 승인하였습니다. 루게릭병이 발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희귀질환이기는 하나 유기용제 및 전자기장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병률이 좀 더 높고 신청인의 경우 만 38세이고, 가족력이나 흡연력이 없다는 점에서 업무환경과 질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지 받고 있는 김유정 변호사,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재직당시 학교비정규노동자들의 친근한 벗이었던 이서용진 노무사, 전 발레오공조코리아 사무국장으로 치열히 투쟁을 벌였던 박상수 송무국장이 상근하게 됩니다. 3명 모두 편안하고 사람 좋은 ‘꽃미남 외모’를 가지고 있고 현장조합원들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남다른 분들이어서 앞으로 충남에서 법규지원 활동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됩니다.